615수정

2001. 5. 16. 판결선고 인
2001. 5. 16. 원본영수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00구6275 보조금지급결정무효확인

원 고 별지 1.목록 기재와 같다.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,

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손난주

피 고 하남시장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병

변 론 종 결 2001. 4. 25.

주 문

1.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별지 2. 목록 기재 일자에 한 소외 환경진흥회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보조금 지급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3호증의 2, 갑 제5호증, 갑 제6호증,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

가. 하남시는 '하남국제환경박람회'를 주최하기 위하여 1998. 6. 15.경 소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(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)를 설립하였고, 1998. 7. 28. 소외 재단법인이 지속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남시 조례 502호로 하남시재단법인 환경진흥회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제2조에 피고가 소외 재단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.

나. 소외 재단법인은 1999. 1. 28. 환경부로부터 '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'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9. 9. 21.부터 같은 해 12. 31.까지 '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'를 개최하였다.

다. 피고는 1999. 7. 30. 소외 재단법인이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하남시 예산에서 별지 2.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으로 25억원을 소외 재단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, 소외 재단법인이 '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'를 개최하였으나 재정적자를 보게 되자 그 결손보전을 위하여 별지 2.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1999. 12. 27. 21억 8,600만원, 2000. 1. 5. 22억, 2000. 5.경 88억원을 소외 재단법인에게 하남시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각 결정하였다(이하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

결정이라 한다)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들은,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민자유치로 인한 재원조달이 실패하여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'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'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를 증액토록 한 후, 1999. 7. 30. 소외 재단법인에게 그 사업 보조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, 또한 피고가 '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'가 끝난 이후인 1999. 12. 27. 21억 8,600만원, 2000. 1. 5. 22억, 2000. 5.경 88억원을 소외 재단법인에게 결손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각 결정한 것은 적법한 근거없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재단법인의 이사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민법상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, 특히 2000. 5.경 88억원의 보조금 지급결정은 같은 해 5. 23. 하남시 의회의원 9명 중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변칙적으로 통과된 의결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결정들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, 원고들은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하남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하남시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시민들로서 피고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하남시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들이 그 부담을 져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 결정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,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조금지급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지방자치법 제14조의 '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

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'는 규정은 포괄적인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비용분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결정으로 하남시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 하남시 시민 개개인의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,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1. 5. 16.

재판장 판사 주경진 _____

판사 김행순 _____

판사 정문성 _____